

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등의 수수료 고시(안)

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26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 등의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수 수 료

대 상	금 액
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신청서	40,000원
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	기본 5,000원, 3건 초과 추가 5건당 4,000원(상한3만원)
교통영향평가기술자 증명서 재발급신청서	1,000원
교통영향평가 대행실적 증명서	15,000원
교통영향평가기술자 등록현황 증명서	1,000원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